

■ 최신 판례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소 처분은 면직 효력 발생 전에만 가능하다고 한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신혜주 변호사

명예퇴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뒤 수사 결과를 비롯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겨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자 2014년 11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원고를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함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이 원고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하였고, 우정사업본부장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4년 12월 31일 00:00를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된 뒤 수사 사실이 통보된 만큼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3항 제3호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제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될 수 있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은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원고에게 2014년 12월 31일 00:00에 면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 우체국장이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 취소결정을 한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